

제2장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산 매뉴얼

I. 요양기관정보마당

II. 금연치료관리시스템

부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다소 변경,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I. 요양기관정보마당

1.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이트 찾기

-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실행
- 2 URL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http://medi.nhis.or.kr) 입력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홈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등록 사이트맵 보안프로그램장애해결 음성 OFF

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검진기관포탈

요양급여비
요양급여비 지급 연간지급내역 수탁지급내역 회귀사전요양급여비지급 결핵 국고지원금 지급 치매치료 대상자 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관리

의료급여비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내역 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방문간호지시서 청구서 목록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명세서 입력

요양기관 공지사항 + more
 *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 2015.01.13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등 계산 ... 2015.01.12
 * 「거간부허가 사전 특례 적어올단 2015.01.02

공인인증서SW개발 공지사항 + more
 * 의료급여일수 이용량 실시간 알... 2014.12.23
 * 결핵 산정특례 관련 수진자 조... 2014.12.24
 * 수진자 자격 조회 M2레이아웃 ... 2014.09.17

공인인증서SW개발 컨텐츠
 * 공지사항 * 규정 및 업무 가이드
 * Broker 가이드 * DLL가이드
 * Webservice 식별개발 가이드 * FAQ
 * 관련도움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공인인증서 사용안내 | 요양기관 회원 서비스안내 | 로그인 오류 대처사항

우리 요양기관 정보조회 | 온라인 설문조사 | ARS 인증 비밀번호 변경

수진자 자격확인 | 법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기관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사업장회원 | 온라인 도우미

업무안내
 보험급여 | 건강검진 | 의료급여 | 노인장기요양

건강IN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권익위원회 | GIRO | 4대사원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중앙민생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영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방법

- 1 「법인인증서로그인」 클릭
- 2 공인인증서에 의한 로그인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양기관정보마당

홈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등록 사이트맵 보안프로그램장애해결 음성 OFF

이웃 때나 건강할 때나 늘 곁마음 친구처럼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보험 영양기관서비스

- 온라인 도우미
- 사업장 회원

통합서비스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사이트맵

로그인 오류시 대처사항

일반로그인

회원선택: 폐업회원(15개월유) |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법인인증서로그인

인증서로그인

아이디 저장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일반로그인은 공인내부 사용자용입니다. 영양기관 회원은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로그인은 보다 많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은행 및 금융사에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공인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법인용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

본 사이트는 전자우편의 무단추출을 금합니다. (2003.2.20) Copyright 2007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ll right reserved.

우)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24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운영자 메일 : webmaster@nhic.or.kr

II. 금연치료관리시스템

금연치료 참여신청 등록 방법

의료급여비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내역
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등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방문간호지시서 청구서 목록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명세서 입력

금연치료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15. 1. 26.~
■ 신청대상 :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 신청방법 : 인터넷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배너 또는 팝업창 눌러 '신청하기' 클릭

수진자 자격확인 | **법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기관 회원가입 > | 공인인증서 등록 >
사업장회원 > | 온라인 도우미 >

업무안내
보험급여 | 건강검진 | 의료급여 | 노인장기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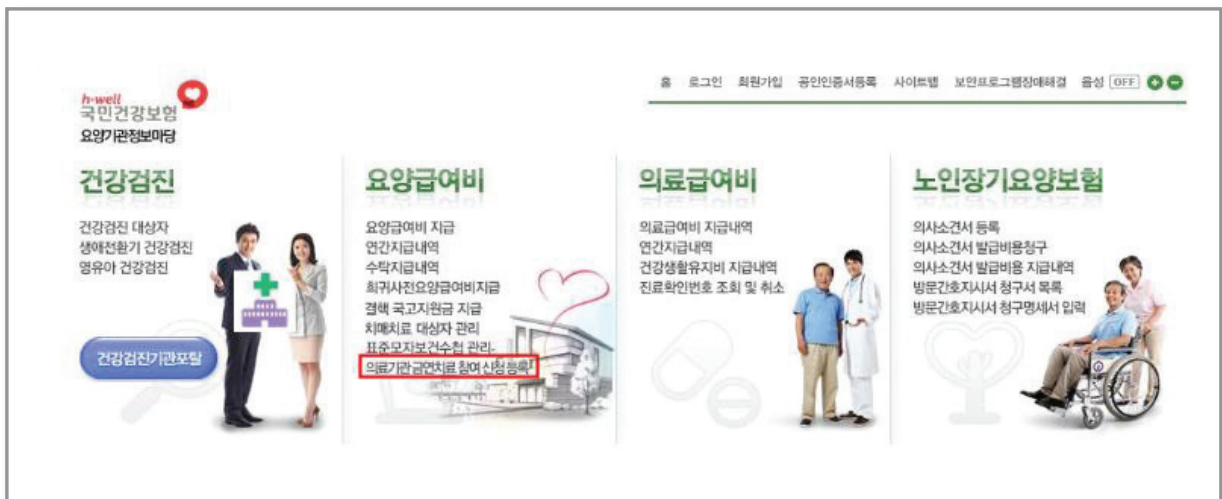
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인증 비밀번호 변경

건강IN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권익위원회 | GIRO | 세대주민등록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처리방침 | 보안프로그램 장애해결
본 사이트는 전자우편의 무단추출을 금합니다. (2003.2.20) | 우: 121-74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도료영주소안내 | 고객센터전화 1577-1000
Copyright © 2010 NATIONAL HEALTH INSURANCE all right reserved.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전산 매뉴얼
본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http://medi.nhis.or.kr>)
 - ② 공인인증서에 의한 로그인
 - ③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배너(11번)를 누르면 등록화면으로 찾아감
 - ④ 등록화면에서 담당자성명, 근무부서, 사무실전화, 신청일자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신청 종료됨
- ※ 팝업창이 닫혔을 때는, 배너(11번)를 누르거나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 업무에서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 신청등록’을 누르면 등록화면으로 찾아감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등록

1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	
신청일자	
담당자성명	
담당자 근무부(팀)	
사무실전화	
사무실팩스	
해지일자	

2 저장하기

1.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등록

화 면 개 요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참여신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메 뉴 구 조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관리		
접 근 방 법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등록 클릭		
사 용 대 상 자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공단
	○		
화 면 구 성	화면설명		
1. 공통 버튼	조회		
2.			
3.			
사용방법			
<p>1)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참여신청을 입력하는 화면이다.</p> <p>2)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요양급여비 업무에서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등록」매뉴를 선택하면 조회되는 화면이다.</p> <p>3) 신청일자(☐아이콘 눌러 마우스로 날짜 클릭) 선택한 후 담당자성명, 담당자 근무부(팀), 사무실 전화, 사무실팩스 순으로 입력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신청이 완료되고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출된다.</p> <p>4) 참여신청을 취소할 때는 2)번 과정 수행한 후 해지일자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참여신청이 취소된다.</p>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 · 비용 입력

1 자격 및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750101 - 123456
성명	홍길동
자격상실일	9999.12.31.
가입자유형	I

2 금연치료 등록 내역

차수	등록일	종결일	종결방법	종결사유	결과
1	2015.02.28.				

3

진료 · 상담 내용 입력

항목명	내용
진료일	2015.03.30.
중단여부	N
면허번호	123456
금연유지여부	Y
금연성공여부	N
금연현상	흡연유구

항목명	내용
처방/상담	☉처방 ☉상담
차기진료일	2015.04.24.
공단부담금	6,300
본인부담금	2,700
상담내용	부작용 경험

3

수정	저장	처방진	상담확인서	영수증
제품명				
바레니클린0.5mg		한국화이자제약(주)		투약일수
바레니클린1.0mg		한국화이자제약(주)		7
제조사				
				21
계				
				28

진료 · 상담 이력

회차	진료일	차기진료일	중단여부	금연유지	금연성공	처방일수	신청액(원)	신청일	지급일	처방진/상담확인서 발행번호
계						56	24,000			
2	2015.03.30.	2015.04.24.	N	Y	N	28	9,000	2015.03.30.		201510001048
1	2015.02.28.	2015.03.30.	N	Y	N	28	15,000	2015.02.28.	-	201510000931

2.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비용 입력

화 면 개 요	금연치료 희망자의 진료·상담내역을 관리하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발행하는 화면이다.		
메 뉴 구 조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관리		
접 근 방 법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입력 클릭		
사 용 대 상 자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공단
	○		
화 면 구 성	화면설명		
1. 조 회 조 건	주민등록번호		
2. 공 통 버 튠	조회		
3. 공 통 버 튠	수정, 저장, 처방전, 상담확인서, 영수증		
사용방법			
<p>1)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희망자의 진료·상담내역을 입력하고 처방전·상담확인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고 진료·상담비용을 신청하는 화면</p> <p>2) 【자격 및 대상자 확인】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 누르면 금연참여자의 기본정보가 조회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금연참여자 조회했을 때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해제를 하거나 2차수 등록을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진료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내원하지 않아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중단된 금연참여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해제 : 중단해제를 선택하면 중단해제 항목으로 이동하며 ▼버튼을 눌러 해제사유를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중단 해제됨 - 2차수 등록 : 2차수 등록을 선택하면 【진료·상담내용 입력】창의 진료일 항목으로 이동하며 진료·상담을 진행하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발행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2차수 1회차 상담내역에 등록됨 </div> <p>3) 【진료·상담내용 입력】창에서 진료일 ~ 상담내용까지 각 항목을 입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전 발행 :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상담내용 입력】창 우측 화면에서 제품명, 제조사, 투약일수, 용법에 입력한다. 입력한 후에는 처방전 버튼 눌러 처방전을 출력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공단에 비용이 신청된다. - 상담확인서 발행 : 상담확인서 버튼을 눌러 상담확인서 출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야 공단에 비용이 신청된다. <p>4) 진료·상담내용을 수정한 이후에는 저장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수정한 후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발행하거나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p>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 내역 조회

② 조회 예셀 출력

조회 조건

의료기관기호 기관명 신청일(From~To) ~

신청결과 전체 지급 미지급

연번	진료일자	대상자	신 청 금 액			차기진료일	지급일
			계	본인부담	지원금 공단 국고		
계							
1							
2							
3							
4							
5							
6							
7							
8							
9							
10							

< 총 00/00 >

3.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내역 조회

화 면 개 요	의료기관에서 금연참여자의 진료·상담내역을 조회·출력하는 화면이다.		
메 뉴 구 조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관리		
접 근 방 법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내역 조회 클릭		
사 용 대 상 자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공단
	○		
화 면 구 성	화면설명		
1. 조 회 조 건	의료기관기호		
2. 공 통 버 튼	조회, 엑셀, 출력		
3.			
4.			
사용방법			
<p>1)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금연참여자의 진료·상담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화면</p> <p>2) 【조회조건】창에서 의료기관기호와 신청일(From, To)를 입력하고 신청결과조건(전체, 지급, 미지급)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금연진료를 받은 금연참여자의 리스트가 조회된다.</p> <p>3) 진료일, 대상자, 신청금액, 차기진료일, 지급일 제목을 누르면 항목별로 정렬(오름차순, 내림차순)된다.</p> <p>4) 리스트를 출력할 때는 출력버튼을 엑셀로 저장하려면 엑셀버튼을 누른다.</p>			

약국 금연치료 약제비 신청 입력

1 금연치료이력 조회

치방전·상담확인서
발행번호

금연치료 이력

성명

등록일

의료기관기호

회차

생년월일

처방·상담일

2 조회

3 조제 및 판매내역 입력

조제·판매일

약사면허번호

약국기호

3 수정 저장 출력

조제 또는 판매내역 입력

제품명(원본)	제조사	특약 일수	용법	단가
니코레트패치 10	한국존슨앤드존슨(유)	7	1	1,353
니코레트패치 20	한국존슨앤드존슨(유)	7	1	1,450
니코레트껌 2mg	한국존슨앤드존슨(유)	3	4	417
니코레트껌 4mg	한국존슨앤드존슨(유)	4	4	430

조제 또는 판매내역 입력

제품명(원본)	제조사	특약 일수	용법	단가
니코스탑트로키 1mg	(주)삼양파이오팜	3	6	375
니코스탑트로키 2mg	(주)삼양파이오팜	4	6	390
계		28		

조제 및 판매비용 현황

구분	총액	지원금	
		본인부담	공과
합계	44,245	21,995	0
금연치료 의약품	0	0	0
금연 보조제	19,621	5,971	0
	11,884	8,384	0
	10,740	7,240	0
약국관리료	2,000	400	0

누적 처방일수	본인부담 상한액 잔액
28	
14	
7	
7	

4. 약국 금연치료 약제비 신청 입력

화 면 개 요	금연치료의약품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상담확인서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조제, 판매하고 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는 화면이다.		
메 뉴 구 조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관리		
접 근 방 법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 금연치료 약제 등록(신청) 관리 클릭		
사 용 대 상 자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공단
		○	
화 면 구 성	화면설명		
1. 조 회 조 건	금연치료의약품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상담확인서 발행번호		
2. 공 통 버 튠	입력, 저장		
사용방법			
<p>1)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상담확인서에 따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조제, 판매하고 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는 화면</p> <p>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의약품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상담확인서에 따라 【금연치료이력 조회】창에서 금연치료의약품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상담확인서 발행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른다.</p> <p>3) 【조제 또는 판매내역 입력】창에서 조제·판매일과 약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내역을 입력하거나 금연보조제 내역을 입력한다.</p> <p>– 금연치료의약품 입력 : 제품명, 투약일수, 용법이 조회된다. 제품명 우측 ▼아이콘을 눌러 제품과 제조사를 선택하고 제품단가를 입력하면 【조제 및 판매비용 현황】창에 총액, 본인부담금, 지원금(공단, 국고) 내역이 계산되어 조회된다.</p> <p>※ 제품단가 : 제품 날개 가격. 의약품은 1정 가격, 패치는 1장 가격, 껌·정제는 1정 가격임.</p> <p>– 금연보조제 입력 : 제품명과 제조사 선택하고 투약일수, 용법, 단가를 입력하면 【조제 및 판매비용 현황】창에 총액, 본인부담금, 지원금(공단, 국고) 내역이 계산되어 조회된다.</p> <p>4) 【조제 및 판매비용 현황】창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버튼을 누른다.</p> <p>5) 내용을 수정하려면 2)번 과정을 진행한 후 항목을 수정하고 수정버튼을 누른다.</p> <p>※ 저장 또는 수정버튼을 눌러야 공단으로 비용이 신청된다.</p>			

약국 금연치료 약제비 내역 조회

조회 조건

①

약국코드

신청결과

신청일(From~To)

~

약국명

전체 지급 미지급

②

조회 엑셀 출력

연번	신청일	대상자	신 청 내 역						신청액	지급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계	본인부담	지원금 공단 국고	계	본인부담	지원금 공단 국고		
계										
1										
2										
3										
4										
5										
6										
7										
8										
9										
10										

5. 약국 금연치료 약제비 내역 조회

화 면 개 요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제 신청결과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메 뉴 구 조	요양기관정보마당 → 금연치료관리		
접 근 방 법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 금연치료 약제 신청결과 조회 탭 클릭		
사 용 대 상 자	의료기관	약국	건강보험공단
		○	
화 면 구 성	화면설명		
1. 조 회 조 건	의료기관기호		
2. 공 통 버 튠	조회, 엑셀, 출력		
3.			
4.			
사용방법			
<p>1) 약국에서 금연치료 약제 신청결과를 조회하는 화면.</p> <p>2) 【조회조건】창에서 의료기관기호와 신청일(From, To)를 입력하고 신청결과조건(전체, 지급, 미지급)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금연진료를 받은 금연참여자의 리스트가 조회된다.</p> <p>3) 신청일, 대상자, 신청액, 차기진료일, 지급일 제목을 누르면 항목별로 정렬(오름차순, 내림차순)된다.</p> <p>4) 리스트를 출력할 때는 출력버튼을 엑셀로 저장하려면 엑셀버튼을 누른다.</p>			

부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일반사항

의료기관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일반사항]

Q 01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여부와 무관합니다.
 - ※ 다만, 금연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①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②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됨

Q 02 지원사업의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 우선 기본 프로그램(12주)을 위주로 2015년 2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 ※ 하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예정

Q 03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재정적 부담은 전가되지 아니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Q 04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거나,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 ※ 홈페이지 안내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우측 “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 “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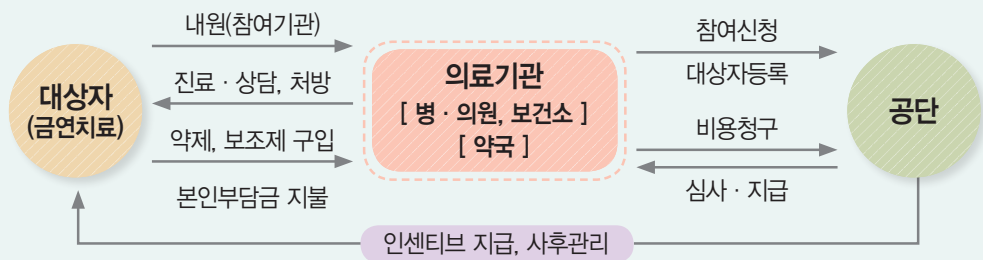
Q 05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공단에 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서 등록

Q 06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 받는 방법은?

-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에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로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구입 시 지원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흐름도]



Q 07 어떤 경우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단되는지?

- 의사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번째 차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기본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Q 08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2번(차수)까지 치료지원이 제공됩니다.
 - ※ 평생 지원 횟수는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09 금연치료 기간 중에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중도에 금연에 실패(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차기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합니다.

Q 10 금연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1년에 2번(차수)까지
(기본 프로그램)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 (지원금액)

* 의료기관 상담·진찰료의 70% 지원

구분	최초상담료(1회)			금연유지상담료(2~6회)		
	공단지원금	본인부담	국고	공단지원금	본인부담	국고
건강보험	10,500원	4,500원	없음	6,300원	2,700원	없음
최저생계비 150%이하	10,500원	없음	4,500원	6,300원	없음	2,700원
의료급여	없음	없음	15,000원	없음	없음	9,000원

* 약국 금연치료 약제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 지원 내용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패치	껌	정제
용법	1일 2정	1일 2정	1일 1장	1일 4~12정 (최대)	1일 4~12정 (최대)
시장평균가격 (개당 평균가격)	680원	1,767원	1,353원	375원	417원
공단 지원액	정 당 500원	정 당 1,000원	日 당 1,500원		
국고 지원액	日 당 1,360원	日 당 3,540원	日 당 2,940원		

Q 11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 가능합니다.
 - 현재 지원되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패치, 껌, 정제”중에 본인의 선호도와 부작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12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12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 금연치료 대상자별로 상담과 처방 내역이 각기 상이함으로 일률적인 비용 산출이 어렵습니다.

[예시 : 12주 기준 금연치료 프로그램 비용]

(단위 : 원)

구분	총비용	건보지원			본인부담		
		소계	상담/ 약국	의약품/ 보조제	소계	상담/ 약국	의약품/ 보조제
패치 단독 사용 (1일1장, 총84매)	185,700	164,100	50,400	113,700	21,600	21,600	0
부프로피온 (1일2정, 총168정)	186,200	134,400	50,400	84,000	51,800	21,600	30,200
바레니클린 (1일2정, 총168정)	368,900	218,400	50,400	168,000	150,500	21,600	128,900

*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상담 6회, 약국 방문 6회 기준)

Q 13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구입하는 방법은?

-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금연보조제는 의료진이 처방하지는 아니하지만, 의료기관에 등록된 대상자가 의사의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4 전화로 상담이나 패치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 전화상담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는 의사의 대면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전화상담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 이용

Q 15 금연치료 성공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율·금연성공율이 좋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안 등은 추후 결정하여 안내

Q 16 금연침과 같은 금연치료에 대하여 지원하는지?

-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금연침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협의과정에서 인정여부를 검토 예정임
 - ※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성분명: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와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Q 17 1년에 2번(차수)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남용 방지 및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1년은 회계연도 (1.1.~12.31.까지) 기준임

Q 18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 ①의료급여수급자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 지원상한액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상한액 초과분 본인 부담하여야 함

Q 19 장기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4주 이내 처방만 가능합니다.
- 보조제 남용방지, 금연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 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Q 20 가족 등이 대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사의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임
- 따라서, 가족이 대신하여 금연치료의약품의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로 금연 보조제 구입할 수 없습니다.

Q 21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의 중복이용은 가능합니다.



Q 22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과의 차이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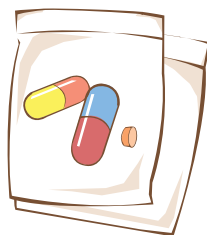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우선 접근성이 유리한 가까운 금연치료 병·의원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대면상담과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 받을 수 있으나 금연참여자 부담금이 발생하고,
-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든 금연 희망자가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23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의 안전성 문제?

- 흡연으로 인한 수많은 독성물질 노출에 비하면 금연보조제를 통한 니코틴은 흡연보다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연구·발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임산부 및 수유부, 심혈관질환자, 청소년 등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료진과 상담

Q 24 최초로 등록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근무지 변경 등으로 최초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가능합니다.



부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의료기관]

Q 01 처방전 재발행은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 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가 된 금연참여자는 재발급 할 수 없습니다.
 -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은 12주를 1차수로 하여 최대 2차수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제 구입도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된 처방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Q 02 진료·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지급계좌의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Q 03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 추진

Q 04 SMS 수신 여부는 왜 확인 하나요?

- 공단에서 차기진료일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진료일 1~2일 전에 안내하고, 금연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수신에 동의하였으나, 추후 SMS 수신을 거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차기 진료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SMS 발송여부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Q 05 금연치료 관련 서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금연치료 등록(상담)대장(서식2)”과 “금연치료 문진표(서식3)”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금연치료 문진표(서식3)”는 의료인이 작성하며, 진료·상담에 참고하고, “금연치료 등록(상담)대장(서식2)”은 병·의원에서 대장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06 금연참여자가 차기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는?

-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하여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07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상담을 같이 받은 금연참여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청구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금연치료 요양급여기준과 별도의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Q 08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서식4)”를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구입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09 병·의원이 금연참여자 등록을 지체없이 해야 하는 이유?

- 약국에서 금연참여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병·의원에서 등록한 금연참여자가 조회되고, 처방 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지체없이 금연참여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10 금연치료는 반드시 금연참여자가 내원하여 진료·상담해야 합니까?

- 네! 반드시 내원하여야 합니다.
 - 금연참여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11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 흡연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입니다.

Q 12 진료·상담비용을 최초상담과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 최초상담의 업무 강도(흡연자 평가, 니코틴의존도 검사 등) 등을 고려하여,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담료도 다르게 책정한 것입니다.(최초 상담료는 1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Q 13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 구입이 안됩니다.
 - 1건 처방전에 대하여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므로 2개 약국에서 비용신청이 안됩니다.
 -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14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합니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다만,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5 입원진료 중인 환자도 금연치료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다만, 금연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연치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16 「건강보험법시행령」제18조의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 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단,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록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FAQ

[약국]

Q 01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약제비 신청 및 금연참여자 부담금 수납 방법은?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하여 ① 투약 일수, ② 1일 용법, ③ 정 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금연참여자로부터 “금연참여자 부담금”만 수납 받으면 됩니다.
 - 상기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다만,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는 비급여 의약품이기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사업비 지원 초과 비용은 금연참여자가 부담합니다
 - ※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Q 02 금연참여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건강보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도 금연치료 지원사업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3 약제비 등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신청비용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니까?

-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지급계좌의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Q 04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감기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상담을 함께 받고 약국에 일반처방전과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일반처방전은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합니다.

Q 05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 추진

Q 06

한방 병·의원에서 발행한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에 대해서도 금연보조제 판매가 가능하니까?

- 예, 가능합니다
 - 금번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한의사가 금연참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에 한하여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한의사는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의 금연치료의약품에 대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함
 - 따라서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가 발행된 경우 약사는 금연 보조제를 판매하고,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비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7

약국에서의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에 의한 금연보조제 판매방법은?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약국은 이에 따라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08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및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가 수기로 발행된 경우 처리 방법은?

- 금연치료 금연참여자의 처방전 및 상담확인서는 공단의 전산에 의한 전산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처방전 등이 수기로 발행된 경우, 약국은 우선 금연참여자에게 조제 또는 판매하고 추후 전산 조회 확인 후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금연참여자 등록 및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금연치료 등록 금연참여자 여부에 대한 전산 확인이 불가능하며, 약제비 신청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